

붙임 2. 2021-1학기 학생회비 정기감사 공고

안녕하십니까 제37대 대의원회입니다.

2021-1학기 학과 학부 학회비 정기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 해당 사용내역 일자]

2020년 11월 28일(목) - 2021년 5월 14일(금)

5월 14일 이후 사용내역은 다음 학기에 실시될 정기감사에 포함됩니다.

[감사기간]

1차 감사: 5.17.(월) ~ 5.21.(금) 17:00

2차 감사: 5.24.(월) ~ 5.28.(금) 17:00

[제출서류]

1. 통장 원본
 2. 통장사본
 3. 학회비 납입 안내문
 4. 학회비 제출 명단
 5. 금전출납부
 6. 영수증 양식(실물 영수증 첨부)
 7. 필요에 따라 작성한 개인영수증 양식
 8. 전체(2번~7번 스캔 또는 사진) 이미지 파일
- 8번에 해당되는 파일은 각 담당 상임위원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기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저와 카카오톡 채널(상명대학교 대의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제24조(목적) 징계의 목적은 감사시행결과 감사대상이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시정의 촉구와 반성과 전진의 계기를 주어 이후 보다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의 추진과 집행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제25조(징계사유)

1. 감사자료가 미제출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했을 경우
2. 예산감사에 있어서 예산지출의 오차가 발견되었거나 예산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을 경우
3. 사업의 집행이 학생회칙에 어긋났을 경우
4.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본 세칙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6. 피 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 불응 또는 불참했을 경우
7. 기타 대의원회에서 징계의 사유로 판단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제26조(징계내용)

1. 주의1, 주의2
2. 경고1, 경고2
3. 경고2회 이상 누적시 대의원회에서 최고 징계 수위 및 여부를 결정
4. 예산정지(2주 ~ 4주)
5. 학교 및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 사과문 게시
6. 상환조치
7. 운영위원회 자격 박탈
8. 각 자치기구 회장, 부회장 장학금 지급 금지

9. 집행부에 대한 해임안 발의

10. 감사 대상의 정·부회장에 대한 탄핵 관련 핵심 간부회의 발의

11. 학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피감사주체에 대한 학교당국의 처벌요구

제27조(의결)

1. 위 제26조 1, 2, 3, 4, 5, 6항은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2. 위 제26조 7, 8, 9, 10, 11항은 상임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대의원회 총회에 상정한다.

제29조(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징계를 받은 감사 대상기구 및 대상자는 징계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서면으로 이의를 대의원회에 제출하면 이의제기는 접수되며, 이때 정기 대의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단 징계를 받은 감사 대상기구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재심기간동안의 징계는 유효하다.

붙임3. 감사 체크리스트

상명대학교 학생회 감사시행제책 제3장 감사 제16조 감사기준			
학과명 :	담당자 :	확인	특이사항
1. 사업 계획의 수립은 적절했는가?			
2. 학생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학생들의 의사수렴을 거쳤는가?			
3. 학생회칙을 준수했는가?			
4. 사업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경우 원인은?			
5. 회계보고서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으며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가?			
6. 잘못된 구매행위나 계약은 없었는가?			
7. 학생회비를 남용·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8. 수입과 비교해 볼 때 지출은 적당한 것인가?			
9. 각 학부(과, 전공) 학생회 감사 기준안을 준수했는가?			
10.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			